

‘얀센 접종’ 부스터샷, 연내 시작한다…세부기준 공개

기본접종 6개월 지나 가급적 8개월 이내 실시
“얀센 접종자 12월 도래…추가접종 계획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 샷·booster shot)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6~8개월 안에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얀센 접종자에 대해선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면역저하자 외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취약시설이나 해외 출국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5개월이 지났을 때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3일 이런 내용의 추가접종 세부 실시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기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일,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추가접종 원칙을 세웠다.

앞서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7일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3월20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2차 접종을 시작한 코

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이달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15일부터 추가접종이 진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추가접종 1단계 대상에 포함돼 접종 완료 6개월을 맞는 대상자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 추가접종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국내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들 다음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는 대상은 올해 6월10일 군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1회 접종을 진행한 얀센 접종자들이다. 6월10일 접종자는 오는 12월7일이면 180일이 지난다. 이후 일부 60세 이상 등도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홍정의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은 화이자·바이오테크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기본이지만 12월 이후 추가접종 대상자 접종 백신 종류는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을 받아 보건소에 직접 등록할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도 보건소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이슬기자

광주 붕괴 참사 계약 브로커 실질심사 마치고 ‘침묵’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 1곳으로부터 1억 원 받아 채권 협의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을 오간 학동 4구역 계약 브로커 주모(70)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주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모(73)씨와 공모해 2019년 3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업체 1곳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채권 협의다.

붕괴 참사 관련 공정 업체 선정에 부당 개입한 브로커는 주씨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주씨를 제외한 3명은 구속됐고, 이중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은 조합 계약 수주를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거나 이권에 개입했다. 서선욱기자

법원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없어”

“시공자 지위 독점 주장, 법적 근거 없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원 부장판사)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빗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빗고을SPC)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빗고을SPC는 지난해 1월 출자 지분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다.

하지만,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빗고을SPC가 롯데건설(주)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양 측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빗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제안 요청서 지침 등을 위반한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개 쟁점에 대한 권리 소명이 부족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안서 내용과 평가표에는 시공자가 누구이고, 시공 능력이 어떠한지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성원의 역할만에 한양을 시공사로 기재했더라도 제안서 주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각 평가 사항에서 고점을 받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 일뿐”이라고 봤다.

또 “공동사업약정(한양 측에 아파트 시공권 50% 보장)은 빗고을 법인이 설립되기 전 컨소시엄 구성

원인 한양·우빈산업·파크엠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약정에 따른 권리 의무를 빗고을이 인수한다는 데 대한 소명도 없다. 이 약정 효력은 빗고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양·우빈산업·파크엠 등 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케이앤지스틸이 추가로 참여해 지분 변동이 있었으므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고을 정관 전문을 근거로 한양컨소시엄의 법률 관계를 빗고을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한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 전문에는 이 같은 취지의 명시적 문구가 없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해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에 따라 한양이 이 사업 시공자 지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도시공원 기부 채납과 필요 기준 충족 시 비공원시설 설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슬비기자

“광주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철회하라”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거칠 예정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8일 시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

행했다”며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 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양태행정도 문제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11월1일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아 보인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